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64호
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9832호, 2019. 6. 11., 일부개정)에
따라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」를
근거로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
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.

- 이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